

	우수교원 선정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9. 3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수성과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업적이 뛰어난 우수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부분) 우수교원상은 종합, 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협력부문으로 나누어 원칙적으로 매년 각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.

1. 최우수교원상 : 종합성과(교육, 연구, 봉사, 산학)가 우수한 교원
2. 교 육 상 :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
3. 연 구 상 :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원
4. 봉 사 상 : 봉사성과가 우수한 교원
5. 산학협력상 : 산학성과가 우수한 교원

제3조(시상시기) 매 학년도 기준으로 우수한 성과활동을 한 교원을 선발하여 다음 학년도 개교기념일 행사시에 시상한다.

제4조(성과심사위원회) ① 우수교원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는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한다.

② 우수교원의 심사는 당해 연도 교원성과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사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추천 및 선정) ① 교원성과평가위원회에서 교원성과평가결과 부문별 업적점수 상위자 1~3인을 우수교원 후보자로 추천한다.

② 총장은 추천자 중에서 우수교원을 선정한다.

제6조(시상 및 포상)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
② 부상은 상금으로 하며,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